토론회 자료집

제3회 KISO 포럼 :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 일시 : 2017년 8월 25일(금), 14:30~16:3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40	〈개회 및 환영사〉 이해완 KISO 포럼 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분
14:40~15:10	〈발제〉 주 제 :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개정안에 대한 분석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30분
15:10~15:20	Coffee Break	10분
15:20~16:10	〈토론〉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가연 오픈넷 상근변호사 오수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한지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0분
16:10~16:30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20분
16:30	폐회	-

[발제]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개정안에 대한 분석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개정안에 대한 분석

2017. 8. 25. 프레스센터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차례

• 임시조치제도의 개요
• 임시조치제도의 본질
• 임시조치제도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쟁점별 비교
• 결언

임시조치제도의 개요

-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 연혁

  - 이 제도는 업계에서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실무적인 처리를 하다가, 2001. 1.16.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당시 '정보의 삭제요청등 ' 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임

  - 저작권법에서는 2003. 5. 27. 불법저작물의 전송중단제도가 같은 취지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미국의 DMCA에서 유래)

3

임시조치제도의 개요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4

임시조치제도의 본질

- 임시조치제도의 본질(1) : ADR
  -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 등의 유통으로 발생한 분쟁의 해결기능
  - 자주성 : 정보의 유통에 관여한 OSP가 직접 분쟁을 해결
  - 신속성 : 재판 등 전통적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
  - 효율성 :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 임시성 :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아닌,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한 임시적인 분쟁해결이므로 당사자의 이익침해의 완화효과 있음

5

임시조치제도의 본질

- 임시조치제도의 본질(2) : OSP의 책임법제
  - 명예훼손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OSP의 책임귀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판단이 가능
  - 임시조치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책임의 감면구조 논의 가능
  - 현행법상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따른 책임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제6항. 2007년 개정시 도입)
  -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

6

임시조치제도의 본질

- **임시조치제도의 본질(3) : 인터넷 내용규제법제**

  - 이 조문은 제44조의7(불법정보 규제)과 함께 국가의 인터넷내용규제체계의 성질을 가짐
  - 이 지점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갈등관계 형성

    * 유승희의원 안에서 '사실상의 사전검열 ' 우려의 취지
  -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는 이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불법정보 처리 근거가 존재하지만,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를 가짐
  - 내용규제체계이긴 하지만, 제44조의2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의무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ADR의 본질상 타당한 입법 태도라고 할 것임

7

임시조치의 주요 내용

- **신청요건**
  - 대상 정보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 신청인 : 침해를 받은 자
  - 신청 사항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 소명 : 침해사실의 소명
- **OSP의 조치**
  - 조치내용 :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2항), 임시조치(4항)
  - 통지 및 공시 :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필요한 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함
  - 임시조치기간 : 30일 이내
  - 약관 명시의무 : 임시조치제도의 약관 명시

8

임시조치의 주요 내용

- **재개시 절차(규정 없음)**
  - 정보게시자의 신청, 재개시, 재개시에 대한 이의(재임시조치 요청 포함)
    *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 **임시조치기간 만료시의 조치(규정없음)**
  - 임시조치기간 이후 삭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9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권조정절차 등(안 제44조의2, 제44조의14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봄.
  2)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권조정결정을 하도록 함.
  3)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10

유승희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정보게재자가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일 이내에 차단 조치된 정보에 대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제예정일을 요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매년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8항).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받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9항).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한 인터넷 게시 정보에 관하여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11

쟁점별 비교

- 신청인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1항) 침해를 받은 자	(1항)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1항) 침해를 받은 자

- 현행법상 '침해를 받은 자 ' 에는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 법안의 차이가 없고,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음

12

쟁점별 비교

- 신청인의 신청 사항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1항)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1항) 삭제	(1항) 차단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 현행법에 의하면 신청인의 신청사항(제1항)과 OSP의 조치(제2항, 제4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정부안은 제2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삭제로 단일화하였음. 또한 반박내용의 게재는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유승희의원안은 삭제를 없애고, 차단으로 하여 정보게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4항 임시조치는 폐지하여 제2항으로 통합함
- 생각건대, OSP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제4항은 신청과 처리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제2항으로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고, 선택의 재량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삭제, 차단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 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13

쟁점별 비교

- OSP의 조치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2항)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4항)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2항)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	(2항) ‘차단’ 등 필요한 조치

- 신청사항에 대응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함
- ‘삭제, 차단,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14

쟁점별 비교

- 당사자에 대한 통지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2항) 통지의무 규정. 다만 통지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항)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 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현행과 같음

- 통지의무 자체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통지할 사항을 정한 정부안이 당사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다 타당한 입법태도라고 할 것임

15

쟁점별 비교

- 이용자를 위한 게시판 공시의무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2항) 있음	현행과 같음	- (2항) 현행과 같음 - (5항) 현행과 같음. - (신설) 신청인의 정보게재자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유승희의원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제2항 제2문을 그대로 유지한채, 제5항에서 이용자를 위한 공시를 적시하고, 단서로 제소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5항 제2문은 오타로 보임
- 이는, 신청인의 제소와 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임.

16

쟁점별 비교

- 임시조치의 기간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4항) 30일 이내	(4항) 현행과 같음. 다만 이의제기시에는 직권조정절차의 종료시까지	현행과 같음

- 임시조치 기간을 둘 것인지 또 그 기간을 얼마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로 동일하게 보고 있음
- 다만 정부안에서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직권조정절차의 종료시까지 임시조치의 특별기간을 인정하고 있음

17

쟁점별 비교

-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규정 없음	(5항)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4항)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 신설
<이의제기의 효과>	(6항) 이의제기시 직권조정절차 의무적 회부	(4항) 해당 조치의 30일 이내 해제
<통지의무>	(6항)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지	(4항) 양 당사자에 대한 해제 예정일 통지
<재개시 여부>	(5항) 직권조정절차 종료시까지 임시조치 지속	
<기타>	(5항, 제44조의14) 이의제기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 도입	

18

쟁점별 비교

- 정부안과 유승희의원안이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한 것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 이의제기시 효과와 관련하여,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유승희의원안) 아니면 제3자(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를 것인지가 문제됨.
- 정부안은 미국의 DMCA의 재개신청과 신청인의 제소를 조건으로 한 처리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임.
- 유승희의원 안은 저작권법의 원칙적 재개조치를 따른 것임
- 검토건대,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바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재개하는 것은 분쟁의 조기해결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원 등 유권적 판단을 받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임시적인 처리절차인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저작권법은 재개신청시 원칙적으로 재개를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권리주장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19

쟁점별 비교

- **임시조치 기간 만료후 처리**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규정 없음	(7항) 게시물의 삭제	규정 없음

- 30일의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OSP가 어떤 정책, 즉 삭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시킬 것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삭제설은 임시조치기간(30일)이 지나도록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성이 사실상 인정이 된다고 보고 영구 삭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임
- 재개설은 임시조치기간이 경과하도록 양 당사자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이는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20

쟁점별 비교

- OSP의 책임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6항) 임의적 감면조항	(9항) 현행과 같음	(6항) 현행과 같음

- 임시조치를 시행한 OSP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이를 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법상 근거는 있지만 이를 재량적으로 선택한 이상 임의적인 감면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로 나뉘고, 현행법과 개정안은 모두 임의적 감면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저작권법에서 필요적 면제를 취하는 입장과 상이함(제103조 제5항)

21

쟁점별 비교

-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 OSP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또는 그 이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 또는 양 당사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주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도 필요함

  * 참조 판례 : 피고가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22

쟁점별 비교

- 임의의 임시조치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제44조의3)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3) 동일. 통지 사항 신설	(제44조의3) ①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 양 법률안은 모두 임의의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임의의 임시조치는 임시조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본래 의미의 양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 목적의 제도라고 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제도는 OSP의 모니터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OSP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하기 어려움
- 따라서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23

쟁점별 비교

- 임시조치 현황 보고

현행	정부안	유승희의원안
규정 없음	규정 없음	(8항) OSP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임시조치 현황 보고 의무 신설

- 유승희의원안은 임시조치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OSP에게 매년 2회 임시조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그러나, 이 제도는 자율적인 분쟁해결기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굳이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만일 보고의무의 신설과 동시에 의무위반시 제재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보고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므로 의무이행 강제수단 도입시에는 자율적인 제도에서 '타율적인 제도 ' 로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설은 타당하지 아니함

24

결언

-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지만, 자주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은, 1)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여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 점, 2) 기타 일부 절차를 개선한 점은 개정방향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1)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점, 2) OSP의 필요적 책임면제제도를 두지 않는 점은 재검토를 요함

25

[토 론 문]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개정안에 대한 분석에 대한 토론문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시조치제도의 입법취지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피해자 권리의 신속한 구제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도모하면서도, 당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현재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정보 규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원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포털 사업자가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그 본래취지와는 달리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시조치제도임

○ 임시조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첫째, 임시조치제도가 '피해자 혹은 권리침해주장자에 의한 남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v.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몰각된 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된 역사가 있음. 대표적으로 국가나 정부권력,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가 있음. 물론 2009년 KISO의 출범과 각종 정책결정들을 통해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운영의 측면에서는 초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권력, 예컨대 대기업이나 종교단체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측면에서도 아직 그렇다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운영의 측면 이전에 이 제도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의 측면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

둘째,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요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셋째, 임시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포털 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넷째, 임시조치과정에서 임시조치나 재게시조치에 대한 포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필요적’으로 ‘면제’되고 있지 못함

○ 임시조치제도는 다음가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재게시요청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나 재게시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원래의 정보를 재게시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공적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KISO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로 회부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털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인 공적 심의기관이나 자율규제기구가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임시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포털 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점이 제거될 수 있음. 그리고 당해 정보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KISO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관련하여 공적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자율규제기구인 KISO를 경쟁관계로 설정하는 것도 거시적으로는 심의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어느 기관으로 회부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사자인 정보게시자와 권리침해주장자의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관으로,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셋째, 권리침해주장자의 임시조치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와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게시 과정에 있어서 매개자인 포털 사업자의 ‘필요적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 토론자가 제안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① 정보게시자에 의한 정보의 게시 → ② 피해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임시조치의 요청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지체 없는 임시조치(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당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제됨) → ④ 피해자 및 정보게시자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 → ⑤ 정보게시자가 이의제기 및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재게시요청사실 및 재게시예정일의 즉각적인 통지 → ⑥ 재게시예정일에 당해 정보의 재게시(재게시조치를 취한 경우 당해 정보에 대한 재게시조치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제됨) → ⑦ 공적 심의기관 혹은 자율규제기구에의 자동적인 회부 및 분쟁조정절차 개시

‘현행 임시조치제도와 개정안에 대한 분석’ 토론문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인터넷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될 경우, 통상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하고 급박한 손해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임시조치제도가 도입됨

○ 나체사진과 같이 명예훼손임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빠르고 손쉬운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 국가·기업 등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과 같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나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 임시조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 신청권)**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임시조치 여부의 요건으로 설정하면, 사업자는 게시물 내용이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안게 됨

- 정부안이 임시조치를 신청권자를 ‘침해를 받은 자’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개정한 것은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일응 합리성이 있음

- 다만, 침해의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정보게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받을 우려가 있는바, 권리주장자의 임시조치요청이 부당한지 여부를 빠르게 심사하여 임시조치가 해제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 통지 및 공지)** 현행 제44조의2 제2항은 ① 삭제·임시조치를 하고, ②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③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함

- 정부안은 ①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는 없애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만을 남기고, ②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판에 게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③ 현행

제2항 후문을 제3항으로 분리하여, 해당 게시판에 임시조치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

- 유승희의원안은 제44조의2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없애고, 차단하는 임시조치만으로 일원화한 점은 정부안과 동일함

○ **(임시조치 해제절차)** 정부안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30일'로 통일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 임시조치 기간을 직권조정절차 종료시까지로 연장하되(제4항),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직권조정절차로 회부되도록 하고(제5항), 관련 자료를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제6항)

- 유승희의원안은 정보게재자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여 정보게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즉, 정부안은 권리주장자가 임시조치를 쉽게 신청하고 정보를 빠르게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정보게재자는 단순한 이의제기만으로 직권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여 준 것으로 평가됨

○ **(임의의 임시조치)** 나체사진 등 명예훼손임이 명백한 정보가 게재될 경우,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권리주장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둔 것으로,

-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44조의7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판단 오류에도 불구하고 게시물 차단에 따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해당함

- 유승희의원안은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사업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임시조치 현황 보고의무)** 유승희의원안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2회 방통위에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를 신설하고,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8항, 제9항)

- 정부안은 별도로 임시조치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임시조치로 인한 이의제기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내용공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등 절차를 통한 임시조치 현황 공개 등이 가능할 것임

○ **(임시조치 기간만료시)** 정부안은 임시조치 기간만료시까지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면서, 정보게재자가 소명없이도 쉽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의 요건을 쉽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게재자가 자신이 게재한 정보에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차단이 되었음에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됨

- 유승희의원안은 정보게재자가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임의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와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임의조치가 해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임이의신청시에 정보게재자가 스스로 소명을 하여야 하므로 정부안에 비하여 이의신청이 쉽지 않음

- 전반적으로 정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30일간의 임시조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현재는 사업자가 권리주장자 또는 정보게재자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오판으로 인한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사업자가 각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미 동일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기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제3회 KISO 포럼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토론문

김가연(오픈넷 상근변호사)

1.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

○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이 한해 수십만 건으로 추정됨. 대부분 소비자 불만글, 대기업 또는 종교단체 비판글이며 심지어 공인에 대한 비판글 역시 임시조치로 사라지고 있음

(1) 남양유업 사례

- 한 네티즌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남양유업의 갑질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으나, 남양유업은 업체를 고용해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되었음
- 해당 네티즌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30일 이후 복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줌

(2) 아이엠피터 사례

-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 게시
- 해당 글에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소망교회 측의 신고에 의해 게시글이 30일간 임시조치됨

○ 권리자의 주장만 있으면 게시글을 30일 동안 차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의 폐단은 우리나라 특유의 진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로 인해 더욱 악화됨

2. 개정안 검토의견

○ 2016. 6.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6. 8. 9. 더민주당 유승희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두 안 모두 19대 제출·발의된 후 폐기된 안들과 거의 동일함

○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은 모두 현행 임시조치 제도에 게시자의 복원권을 보장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자는 취지임

○ 그러나 **복원권 보장에 충실한 유승희의원안**과 비교할 때 **방통위안**은:

(1) **공익적·합법적인 게시글도 권리 주장만 하면 반드시 차단**

※ 현재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고위공직자 임시조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방통위안은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을 불법화함

(2) **현재보다 퇴보된 기약 없는 복원 절차**: 게시자의 이의제기시 1) 직권조정절차에 회부하고, 직권조정결정 확정까지 최소 26일에서 최장 55일 이상 소요되며, 직권조정 결과에 따라 2) 소송까지 해야 게시글이 복원됨

- 즉, **복원 요청시 유승희의원안은 일정기간 내 "반드시" 복원**되나, **방통위안은** 직권조정에서 해제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삭제됨**
- **현행은** 사업자가 게시물이 공익적 또는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의 개입이나 소송 없이도 신속히 복원**시켜줄 수 있는데 방통위안은 이 가능성을 없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유지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구가 명예훼손 등 판단권 행사**하는 행정검열권 부여

(4) **방통위안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없으면 반드시 삭제**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율이 5%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억압적임. 현행과 유승희의원안은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삭제 의무 없음

○ 방통위안은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유승희의원안은 완벽하지 않으나 방통위안보다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훨씬 잘 보장하고 있음

3. 오픈넷 제안

(1) 이의제기시 임시조치 해제시점을 30일에서 **최대한 단축**

(2)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면책 수준은 **필요적 면제로 강화**

(3)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부당한 삭제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여 요청자의 **임시조치 제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 마련**

(4) **임의의 임시조치** 조항은 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

(5) 임시조치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와 방통위의 **투명성 보고 의무화**

[참고] 방통위안-유승희의원안 비교표

	방통위안	유승희의원안	오픈넷 의견
임시조치 신청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현행 유지 (사업자 자율규제)	○방통위안은 **침해주장만 있으면 합법적 또는 공익적 게시물도 무조건 임시조치** -현재 인터넷기업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공익적 글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방통위안은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을 불법화함 -포털사업자는 남양유업 갑질 등 기업비판글, 옥시 가습기살균제 등 소비자 고발 게시물, 공인, 의료기관, 종교단체 비판글 등 공익적인 게시물도 모두 임시조치 해야 함
임시조치 기간	“30일” 또는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	이의신청시 “30일 이내” 해제	○유승희의원안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업자가 즉시라도 “차단” 해제 가능하며, **게시글은 반드시 복원**됨 ○방통위안은 복원이 매우 어려움: -**직권조정기간 최장 55일 이상**(이의제기시간 30일+사업자 자료송부+직권조정결정 10일+직권조정확정 15일)**+해제 결정 or 소제기 필요** -조정결정 “10일 이내” 제한은 제재조항이 없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음

	방통위안	유승희의원안	오픈넷 의견
임시조치기간 만료시 조치	“즉시 삭제”	현행과 동일 (사업자 자율규제)	○방통위안은 침해주장만 있으면 **합법적·공익적 게시물도**(이의제기 없을시) **무조건 삭제됨**
복원절차 (이의제기시)	임시조치된 상태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	해당 조치 30일 이내에 해제	○방통위안은 직권조정에서 임시조치 유지 결정시 **게시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복원**됨
명예훼손 판단권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현행 유지	○유승희의원안은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이의신청시 **자동적으로 해제하면 되므로 명예훼손 판단 필요 없음** ○방통위안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구가 직권조정 권한을 갖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행정검열로 기능** -또한 30명 규모의 분쟁조정위 신설·유지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

제3회 KISO 포럼
「임시조치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토론문

오수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본래 입법목적과는 달리 주로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작성한 부정적인 온라인 소비자리뷰의 삭제조치로 사용되고 있음

○ 정당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러 이슈가 된 기업에 대한 비판 등 공익성을 가진 글조차 권리침해 주장자(사업자)들이 게시중단 요청만 하면 용이하게 임시조치에 취하여져 차단되었다가 삭제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임시조치제도가 소비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정보의 일환인 온라인 소비자리뷰의 제공 및 유통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 소비자리뷰에의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제한하고 동제도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공익적 관점에서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발제안의 해당 쟁점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신청인의 신청사항, OSP의 조치 관련

□ 발제(안)과 같이 신청인의 신청사항과 OSP 조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방향도 기본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 **발제(안) 제4항 OSP의 조치에** '삭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OSP는 개별 게시물에 대하여 복잡한 명예훼손 여부나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주로 해당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항 발제안의 '삭제'**조치가 제외될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2. 정보게시자의 이의신청권 및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처리 관련

□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임시조치제 시행 이후 정보게시자의 이의신청권, 임시조치 기간 만료후 처리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의신청권)** 정부안과 유승희 의원안 모두 정보게개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있으나, 중요한 고려 사항은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절차가 권리침해주장자의 임시조치 신청절차와 같이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즉 이의신청의 절차적 편리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소비자가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작성한 소비자리뷰에 임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후에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을 감수할 유인은 거의 없기 때문임(<표 1> 참고)

<표 1> 최근 3년간 포털 3사 임시조치·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구 분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합 계	
	임시조치	이의신청	임시조치	이의신청	임시조치	이의신청	임시조치	이의신청
'13년	277,146	10,157	88,634	4,053	9,196	-	374,976	14,210
'14년	337,923	17,515	116,261	3,819	642	-	454,826	21,334
'15년	404,458	52,443	75,360	2,060	448	-	480,266	54,503
'16년 6월말	193,781	27,647	33,692	1,167	330	9	227,803	28,823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유승희 의원안 검토보고서 재작성

□ **(기간만료후 처리)** 현행 ‘임시조치’는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임시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영구 삭제조치’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OSP입장에서는 임시조치 이후 해당 정보를 재게시하면 권리침해주장자(사업자)로부터 향후 소송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조치 이후 OSP가 해당 게시물을 자율적으로 다시 게재할 유인이 높지 않은데 기인

○ 또한 이는 임시조치기간이 지나도록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성이 사실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짐

□ 그러나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당사자의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 이는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게시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